〈별지 제4호서식〉

포항시 북구 죽장면 석계리 선도산림경영단지 내 임산물(입목) 매각 견적입찰 고지

포항시 북구 죽장면 석계리 선도산림경영단지 내 입목의 매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견적 계약 고지합니다.

2024 년 11 월 11 일

포 항 시 산 림 조 합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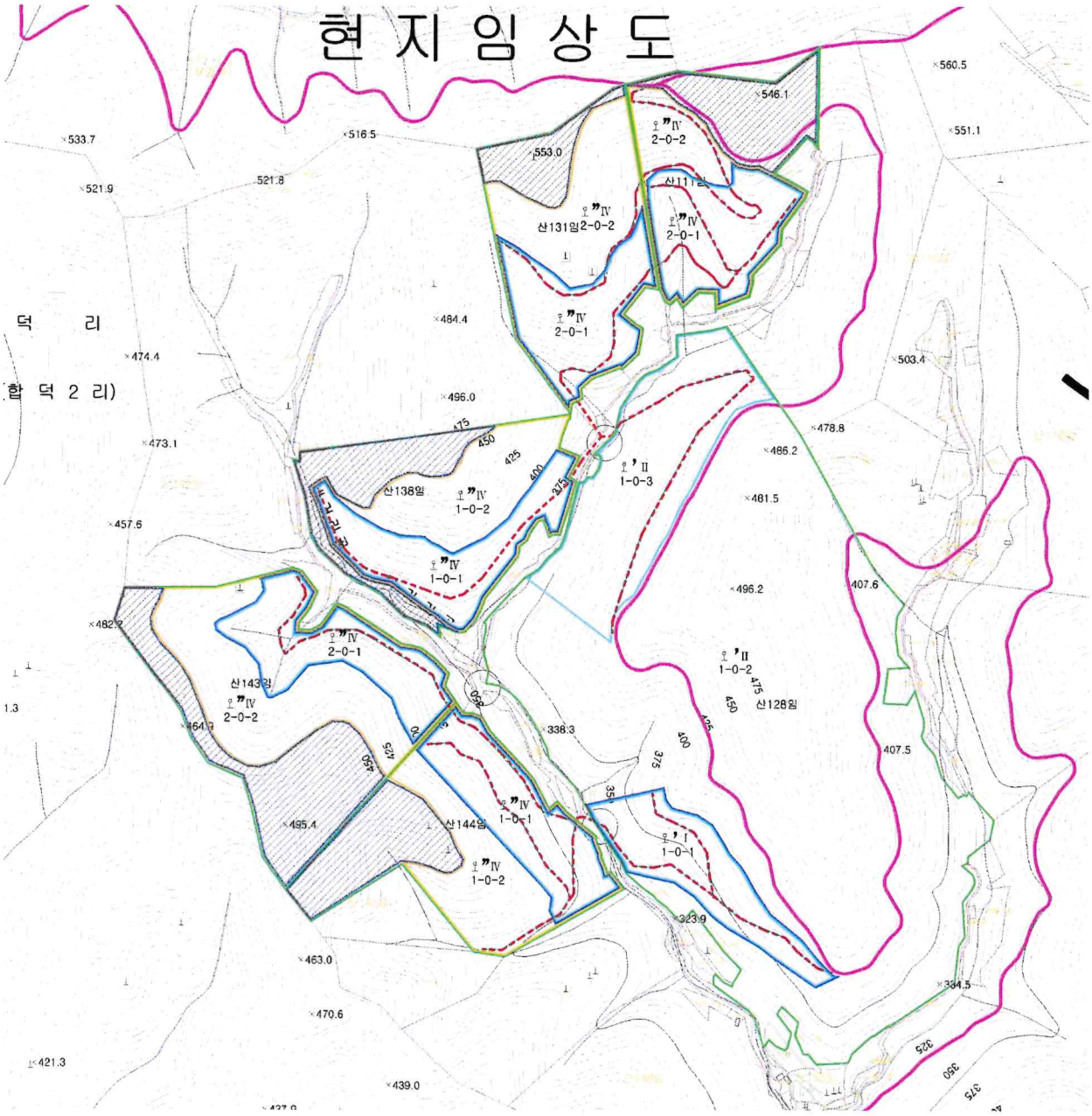
1. 견적계약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 포항시 북구 죽장면 석계리 산111외 4필지

나. 산물소재지 및 수량 등

소재지	벌채면적(ha)	수종	임황정보			반출기간
			평균흉고직경(cm)	평균수고(m)	벌채지재적(㎥/ha)	
포항시 북구 죽장면 석계리 산144	4	참나무	16/6-26	9/6-11	114	물건인도일로부터 2025. 02. .28까지
		기타활엽수	18/8-24	9/6-11	62	
		참나무	16/6-26	9/5-11	165	
		기타활엽수	18/8-24	9/6-11	10	
포항시 북구 죽장면 석계리 산143	5	참나무	16/8-24	9/7-11	181	
		낙엽송	18/14-26	12/10-15	37	
		참나무	16/6-26	9/5-11	287	
		기타활엽수	18/12-24	10/9-14	46	
		낙엽송	14/14-18	10/9-14	6	
포항시 북구 죽장면 석계리 산138	4	참나무	14/6-26	9/5-12	161	
		낙엽송	22/22-22	12/12-12	12	
		참나무	14/6-24	8/6-11	129	
포항시 북구 죽장면 석계리 산131	4	참나무	14/8-26	8/6-11	187	
		참나무	18/8-28	9/5-11	119	
		낙엽송	16/6-26	7/5-12	55	
포항시 북구 죽장면 석계리 산111	3	참나무	14/8-24	9/6-12	149	
		낙엽송	18/14-22	10/9-11	32	
		참나무	18/6-26	8/5-11	118	
		기타활엽수	20/16-20	9/9-10	5	
합계	20				1875	

※ 표준지조사에 의하여 산출된 수량이므로 반드시 현장 확인하시고 견적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 현지 임황을 참고하여 작성된 참고용 도면이므로 반드시 현장 확인하시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자 유의사항

1) 입찰자는 벌채구역도, 운재로 예정노선, 현지 물건 및 반출 여건 등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현장 확인을 하지 않아 발생한 제반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생산수량은 표준지 조사 및 조재율에 의해 산정되었으므로 수종별 제재목 및 생산량(재적) 상이를 이유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3) 매수자는 사업 시행 전 반드시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산림사업 신고 후 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4) 임산물 반출에 필요한 운재로는 예정노선에 따라 매수자가 개설해야 하며 산물 반출 후 원상복구 조치를 해야 하고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포항시산림조합(선도산림경영)과 협의해야 합니다. 또한 사유 토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매수자가 협의 처리해야 합니다.

5) 산물반출로 인하여 산림 및 주변 농경지, 민가 등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피해 및 민원 발생 시 매수자가 책임 처리해야 합니다.

6) 벌채구역 내 수림대가 분포하므로 경계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작업해야 합니다.

7) 입찰 후 낙찰 물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현장 안내를 원하시는 경우 사전에 연락 바랍니다.(☎ 054-240-3348)

3. 견적제출 및 참가자격

가. 본 건 은 견적 제출이며, 견적 제출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건의 견적 제출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부정당업자(개인, 일반 또는 법인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부정당업자제재 중에는 대리인으로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및 〔별표2〕 국유임산물 매각기준 제5호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및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음.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목을 매수하거나 벌채허가 등을 받아 벌채한 실적이 있는 자의 경우 : 벌채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산림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의 경우 : 자격증 사본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임업인의 경우 : 임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임업 훈련기관에서 임업기능인 교육을 이수하거나 임업기계장비에 관한 기술교육을 이수한 자의 경우 :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원목생산업 등록을 한 자의 경우 : 원목생산업등록증 사본

마.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현지확인 확약서(붙임2)를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포항시산림조합 선도산림경영과 계약담당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응찰자 제출서류

가. 2024년 11월 20일(수) 18:00 까지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 바랍니다.
(당일 도착분까지 한하여 유효함)

나. 주소 : 경부 포항시 북구 흥해읍 새마을로 331-6 포항시산림조합(우37653)

다. 팩스 : 054-240-3348
(단, 팩스로 제출된 서류는 계약체결 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만약 팩스로 송부한 서류와 원본이 상이한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차점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 팩스 제출 시 입목매각 담당자와 수신 상황을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응찰자가 제출서류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찰은 무효처리 됨.

5. 입찰 및 낙찰자 선정(개찰) 일정

가. 견적서 접수 일시 : 2024.11.12.(화) 00:00 ~2024.11.20(수) 18:00

나. 견적서 제출처 : 포항시산림조합 선도산림경영과

다. 개찰일시 : 2024.11.20.(수) 18:00

라. 개찰장소 : 포항시 산림조합 선도산림경영과 계약담당(※ 사정 등으로 인해 지연될 수 있음)

6. 견적서의 제출

가. 팩스 또는 원본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견적서의 제출은 견적서를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견적서의 제출시간은 견적서가 접수된 시점으로 합니다.

다. 견적서를 제출하시면 별도의 견적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 동일물건에 대하여 동일인이 2회 이상 견적서 제출 시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마. 본 견적입찰에 2명 이상의 공동참가는 불가능합니다.

7. 입찰보증금, 계약(이행)보증금 납부 및 동 세입조치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대금은 고지서로써 통보되는 기한 내에 일시불로 납부해야 합니다.(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 부정당업자로 견적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낙찰자 결정

가. 1명 이상의 유효한 견적 입찰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의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견적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준수규칙에 의합니다.

10. 견적입찰 참가 준비 등의 책임

가. 견적 입찰 참가 희망업체(개인)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입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포항시산림조합 선도산림경영과 벌채계약담당자(054-240-334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은행시스템 피크(Peak)시간대의 경우, 은행의 업무처리 지연 및 시스템 처리용량 저하로 매각대금 납부 불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낙찰자께서는 원활한 낙찰을 위해 피크시간대를 피하고 가능하면 납부마감일 전일까지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위의 '가항' 및 '나항'의 미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된 견적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견적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견적 입찰은 포항시산림조합의 견적입찰로 진행됩니다.

나. 견적 입찰자는 법령 및 관련 법령, 견적입찰공고조건, 참가자 준수규칙 등 견적입찰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견넉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모든 책임은 견적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 입찰자가 다른 법률에 의한 제반사항 미비로 낙찰 제한 및 불이익을 받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조합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라. 본 입목 매각 지역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의한 산림경영계획 인가 지역으로 벌채 후 2차피해보전을 위한 사후관리 작업을 실행해야 합니다.

마. 생산재 반출에 따른 운재로는 입목 매수자가 직접 개설·보수해야 하며 관련 법령에 의한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바. 매수 산물의 벌채 및 반출 시 주변 입목 및 시설을 파손·훼손 하였을 경우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해야 하며, 사유지 통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습니다.

사. 응찰자는 포항시산림조합 선도산림경영과에 비치되어 있는 계약서(안), 재적조서, 도면을 열람하시고 현지 확인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견적입찰서 제출을 마친 자는 매각 물건의 제반사항을 열람·확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 다른 법령에 의한 요건 미비로 낙찰자에게 취득제한이나 행정·법령상 규제 등 불이익이 발생하였더라도 우리조합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 벌채 구역 내 나무의 가슴 높이 부분에 노란색 페인트 표시목은「산림청 친환경 벌채 운용 요령」에 다른 존치목으로 벌채 제외목입니다.

차. 매수산물 중 소나무는「소나무 재선충병방제 특별법」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생산확인용 검인 또는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 운반해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은 매수자가 져야 합니다.

카. 추가정보에 관한 사항

1) 매각내용 및 현장 정보에 관한 문의사항

- 문 의 처 : 054-240-3348(포항시 산림조합 선도산림경영과)

2) 계약에 관한 문의사항

- 문 의 처 : 054-240-3348(포항시 산림조합 선도산림경영과)

3) 입찰에 관한 진행사항 확인 :

- 입찰방법(입찰자)문의처 : 054-240-3348

〔붙임 2〕

현지 확인 등 확약서

견적(계약)건명 : 포항시 북구 죽장면 석계리 산111번지
포항시 북구 죽장면 석계리 산131번지
포항시 북구 죽장면 석계리 산138번지
포항시 북구 죽장면 석계리 산143번지
포항시 북구 죽장면 석계리 산144번지 내 임산물(임목) 매각

본인은 상기 견적 입찰에 참여하면서 게시된 포항시 북구 죽장면 석계리 산111번지 외4필지 임산물 매각계약서(안), 일반매각계약조건을 확인하고, 현지 확인 등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계약체결 이후 상기 제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하였으나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문제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고 이에 대해서는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4년 11 월 일

서 약 자 : (인)

담 당 자 : (인)

포항시산림조합장 귀하

〔붙임 3〕

임목수확사업 위탁대행 특수조건

1. 매각대상목 중에 소나무류(소나무, 잣나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수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포항시 녹지과에서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 매수자는 입찰 전 매각 수량·품질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후에 매각 계약에 응해야 하며 현장 방문 시에 주변여건 및 반출노선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또한 매각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임산물의 수량·품질 또는 산림의 면적에 착오가 있거나 그 물건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임산물을 인도 받은 날로부터 반출 완료 후 적지검사를 받기 전까지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매수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4. 현지 임산물 운반로 시설은 산림훼손이 최소화되도록 매수자가 설치 및 보수를 실행해야 하며 운재로의 시설 전 포항시 녹지과와 협의 후 시설 해야 하고 산원에서 일반도로 사이의 반출 구간 중에 있는 사유지를 통과하거나 일시 사용하는 등의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매수 계약자가 직접 이해당사자와 협의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5. 매각 산물의 반출작업 시 반출노선의 노면상태에 적합한 톤수의 화물차량을 사용해야 하며, 과적을 금하고, 특히 운반로 내 구간에는 대형차량(5톤 이상)이 진·출입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토지 혹은 그에 인접한 시설물을 파손·손상 시 원상복구해야 하며 반출완료 후에는 재해예방을 위한 배수로 및 노면정비, 원상복구 등을 이행해야 합니다.

6. 매각 생산재의 반출 작업으로 인하여 개인 재산 등에 피해를 주거나 발생되는 모든 민원에 대하여 매수 계약자는 성실하고 책임 있게 처리해야 합니다.

7. 매수 계약자는 사업지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아울러 작업원의 안전에 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사업시행자의 책임으로써 작업원에 대한 안전 장비 착용 여부 확인 등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를 해야 함을 알려드리며, 사업 시행 중에 일어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